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47호 2023년 2월 24일(금)

규 칙

-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공 고

- 보상계획공고 9
-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3
- 2023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 19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45호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붙임참고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초: 속초시 동명동 450-405번지 외 46필지
- 변경: 속초시 동명동 450-405번지 외 46필지(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5,160m	B=25~29.5m, L=124m	
	소로2-16호선	B=8~11m, L=294m	B=8~11m, L=138m	
	소로3-39호선	B=6~12m, L=245m	B=6~12m, L=18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하나자산신탁(주) 대표 민관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당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124m	1,242㎡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2-16호선	B=8~11m, L=138m	1,594㎡	
	소로3-39호선	B=6~12m, L=186m	1,768㎡	

(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29.5m, L=124m	382㎡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2-16호선	B=8~11m, L=138m	491㎡	
	소로3-39호선	B=6~12m, L=186m	7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대로 3-4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476	1,242					기정
계				386	382					변경
1	동명동	450-405	잡	14	14	국(기획재정부)				기정
1	동명동	450-405	잡	14	14	국(기획재정부)				변경
2	동명동	450-347	대	96	13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450-347	대	13	13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450-406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기정
3	동명동	450-406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4	동명동	450-342	대	162	29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450-451	대	29	29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450-341	대	109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5	동명동	450-450	대	22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6	동명동	450-338	도	87	7	국(국토교통부)				기정
6	동명동	450-449	도	7	7	국(국토교통부)				변경
7	동명동	450-404	대	26	1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7	동명동	450-452	대	12	1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8	동명동	450-291	대	50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8	동명동	450-448	대	22	2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9	동명동	450-287	대	126	55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450-447	대	55	55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450-284	도	202	10	국(국토교통부)				기정
10	동명동	450-445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변경
11	동명동	450-286	대	18	5	국(국토교통부)				기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동명동	450-446	대	5	5	국(국토교통부)				변경
12	동명동	450-3	도	4,338	986	국(국토교통부)				기정
12	동명동	450-453	도	52	52	국(국토교통부)				변경
13	동명동	450-454	도	74	74	국(국토교통부)				변경
13	동명동	450-227	대	112	3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4	동명동	450-444	대	31	3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4	동명동	450-225	도	116	16	국(국토교통부)				기정
15	동명동	450-443	도	20	16	국(국토교통부)				변경

■ 토지조서 (소로2-16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363	1,594					기정
계				491	491					변경
1	동명동	429	대	307	69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	동명동	429-2	대	69	69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	동명동	545-1	대	285	8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545-7	대	82	82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523-1	도	2,104	1,103	속초시				기정
3	동명동	523-1	도	-	-	속초시				변경
4	동명동	545-3	대	251	16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545-3	대	16	16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523-12	도	190	189	속초시				기정
5	동명동	523-12	도	189	189	속초시				변경
6	동명동	544-6	대	162	20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6	동명동	544-8	대	20	20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7	동명동	544-1	대	195	2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동명동	544-7	대	21	2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8	동명동	525-2	대	202	3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8	동명동	525-13	대	39	3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9	동명동	525-1	대	512	3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525-12	대	35	3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525-10	대	155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0	동명동	525-14	대	20	2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 토지조서 (소로3-39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213	1,768					기정
계				789	752					변경
1	동명동	450-358	대	43	4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	동명동	450-358	대	42	4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	동명동	450-349	대	168	5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2	동명동	450-349	대	53	53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3	동명동	450-398	대	39	1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3	동명동	450-398	대	10	1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4	동명동	450-345	대	88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4	동명동	450-345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5	동명동	450-379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5	동명동	450-379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6	동명동	529-8	도	35	33	속초시				기정
6	동명동	529-8	도	33	33	속초시				변경
7	동명동	437-5	대	328	3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7	동명동	437-5	대	36	36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동명동	529-14	도	2	2	속초시				기정
8	동명동	529-14	도	2	2	속초시				변경
9	동명동	437-13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9	동명동	437-13	대	1	1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0	동명동	437-12	잡	2	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0	동명동	437-12	잡	2	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1	동명동	437-2	잡	243	5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1	동명동	437-2	잡	50	50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2	동명동	437-3	창고	555	1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2	동명동	437-3	창고	129	12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3	동명동	531-2	도	1,401	1,022	속초시				기정
13	동명동	531-2	도	-	-	속초시				변경
14	동명동	437-6	대	250	6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4	동명동	437-6	대	62	62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5	동명동	437-4	대	269	6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5	동명동	437-4	대	65	65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6	동명동	535-4	대	278	7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6	동명동	535-4	대	77	7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7	동명동	535	대	350	8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7	동명동	535	대	87	87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18	동명동	529-1	도	33	8	속초시				기정
18	동명동	529-1	도	8	8	속초시				변경
19	동명동	531-3	전	12	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기정
19	동명동	531-3	전	9	9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20	동명동	530-71	대	9	9	시티글로벌㈜	속초시 번영로 170, 2001호			기정
20	동명동	530-71	대	9	9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21	동명동	524-18	도	13	13	속초시				기정
21	동명동	524-18	도	13	13	속초시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동명동	530-79	대	50	50	시티글로벌㈜	속초시 변영로 170, 2001호			기정
22	동명동	530-79	대	50	50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23	동명동	530-69	대	43	6	속초시				기정
23	동명동	530-69	대	43	6	속초시				변경
24	-	-	-	-	-	-	-			기정
24	동명동	530-80	대	6	6	시티글로벌㈜	속초시 조양로 98, 2층(조양동)			변경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12-2번지 일원
- 라. 사업면적 : 2,480m²
- 마. 사업기간 : 2023. 2. 22. ~ 2023.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2. 보상대상

-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2. 22. ~ 2023. 3. 9.
-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내역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12-2, 1312, 1313-1, 1314, 1316, 1317-1, 1317, 1319-3, 1319-2, 1319-5, 1310-23, 1423-44, 1329-7, 1329-3
물건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개설공사	
2.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속초시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분야별 위원을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속 초 시 장

1. 명 칭 :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7명
3.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5. 기 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인 공공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타당성 조사 대상인 공공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반영 및 건축기획 수행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기행 수행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응모자격

-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위원 선정

-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8.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4.(금) ~ 2023. 3. 9.(목) 18:00까지 / 14일간
- 접수장소 : 속초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우) 24826
 - 이 메 일 : choike77@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33-639-2714) 하시기 바람
 -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유효함

○ 제출서류

- 속초시 공공건축심위원회 위원 응모지원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1부.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9. 기타사항

- 지원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학력,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회의록 등)는 우리시 지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033-639-27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서 작성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모분야” 는 해당 모집분야명 기재
 - ③ “주소” 현재 거주지 또는 근무처 중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기재
 - ④ “연락처” 는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기재
 - ⑤ “학력” 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 ⑥ “경력” 은 당해분야 실무경력을 기재하며, 타 지자체 위원회 위원일 경우 반드시 기재
 - ⑦ “자격사항” 은 당해분야 취득자격을 정확히 기재(사본 첨부 제출)
 - ⑧ “논문, 수상 등” 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속초시는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해축 시 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위촉기간		
- 정보의 이용 목적 : 속초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해축 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급수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시중지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2023년 해빙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재개일자 : 2023. 3. 2.(목)
2. 내 용 :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시공
3. 사 유 : 해빙기 도래에 따른 급수공사 재개
4. 문 의 처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532, 3703)